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20100호, 2024. 1. 23. 공포, 2025. 1. 2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손상관리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(안 제3조)

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의 통보,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제출,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보완 또는 개선 요청,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

나.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(안 제4조 ~ 제9조)

- 1)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으로 교육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소방청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정함
- 2)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3년으로 정함
- 3)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

다. 손상연구사업(안 제10조)

손상연구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 연구사업의 목적 및 내용, 참여기관의 선정 기준,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함

라. 손상조사통계사업(안 제11조)

손상조사통계사업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, 조사대상을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및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등으로 정함

마. 손상예방사업(안 제12조)

손상예방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 예방사업의 목적 및 내용, 참여기관의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함

바. 손상원인조사(안 제13조)

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내용과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그 예외를 정하며, 필요한 경우 손상원인조사반을 구성·운영하고 손상원인조사를 관계 연구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

사.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14조)

손상연구사업, 손상조사통계사업, 손상예방사업, 손상원인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

아. 손상관리센터의 위탁 기준(안 제15조)

법 제12조제3항제4호 및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·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이면서 통계 분석 및 조사·연구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함

자. 손상관리센터의 평가(안 제16조)

설치·운영을 위탁한 중앙·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, 질병관리청장이 시·도지사의 지역손상관리센터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시·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함

차. 위임과 위탁(안 제17조)

시·도지사에게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업무와 지역손상관리센터 평가 지원 업무를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하고, 손상조사 통계사업 업무를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위탁하도록 정함

카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(안 제18조)

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중앙·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이 손상연구사업, 손상조사통계사업, 손상원인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생 략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생 략

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손상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) 「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
2.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
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)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·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시행계획 평가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
2.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평가결과

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 평가결과에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교육부
2. 행정안전부
3. 보건복지부
4. 고용노동부
5. 국토교통부
6. 소방청
7. 식품의약품안전처
8. 그 밖에 위원장이 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

②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3년으로 하

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촉위원의 사임·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5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공석일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1.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

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그 밖의 법인·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.

제7조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전문위원회 위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,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손상연구사업)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손상연구사업(이하 “손상연구사업”이라 한다)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1. 연구사업의 목적 및 내용
2.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및 선정 기준
3. 연구사업 결과의 활용 방안
4. 그 밖에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질병관리청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제1항제2호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.

제11조(손상조사통계사업)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(이하 “손상조사통계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정기조사: 1년 단위로 손상 전반에 대하여 매년 시행하는 조사
2. 수시조사: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시기, 지역 또는 손상 종류 등을 대상으로 정기조사와 별개로 시행하는 조사

②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(「응급의료에 관한

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다)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

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

3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제12조(손상예방사업)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상 예방사업(이하 “손상예방사업”이라 한다)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1. 예방사업의 목적 및 내용

2. 예방사업에 참여할 기관 및 선정 기준

3. 그 밖에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제1항제2호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.

제13조(손상원인조사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상원인조사(이하 “손상원인조사”라 한다)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손상원인조사의 방법: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.

다만,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조사 또는 정

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2. 손상원인조사의 내용

가. 손상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에 관한 사항

나. 손상의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

다. 보건의료 영역의 인적·물적·제도적 여건이 손상 발생 및 임상적 예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사항

라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손상원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손상 발생의 원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.

1. 특정 장소에서 동일한 기전의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2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
3. 그 밖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손상의 영향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손상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손상 발생 등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
2. 다른 법령에서 손상을 발생시킨 사고, 재해 등의 원인을 조사하도록

규정하고 있는 경우

④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손상원인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⑥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

제14조(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)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, 손상조사통계사업, 손상예방사업, 손상원인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위탁 기준) 법 제12조 제3항제4호 및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일 것
2. 통계 분석 및 조사·연구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

제16조(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) ①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·운영을 위탁한 중앙손상관리센터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시·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을 위탁한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의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질병관리청장은 시·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⑥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.

- 1. 제3조제4항에 따른 시·도지사에게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업무
 - 2.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 평가 지원 업무
-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손상조사 통계사업 업무를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위탁한다.

제1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질병관리청장(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(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

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사무
2. 법 제9조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
3. 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에 관한 사무

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은 같은 항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7414